

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1. . .
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를 통하여 사진 산업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 조항을 간략히 하고,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원안의 제6조 지원 조항을 수정하고 제7조 위탁 조항을 삭제함.

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비용”을 “비용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하고,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지원) ① 시장은 지역 사진 산업 및 사진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문화·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	제6조(지원) <삭 제> 비용-----.
제7조(위탁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	<삭 제>
제8조·제9조 (생 략)	제7조·제8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